



제41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초중등 교과과정 포함 및 기업가정신 강조〉

■ 조명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947호)

2024.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창업자 및 소외계층 등에 대한 국가의 경제교육 노력의무 (안 제4조제4항 신설)	2
2. 학교에서의 경제교과 교육 포함(안 제5조제2항 후단 신설)	5
3. 경제교육 핵심개념에 기업가정신 포함(안 제6조제3항)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명희의원 등 22인

나. 발 의 일 : 2023. 12. 18.

다. 회 부 일 : 2023.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비, 생산, 금융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경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이 활발하게 발휘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체계화, 기업가 체험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실시되어 경제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교육에도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으로서 기업가정신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업가정신이 포함된 경제교육을 창업자, 예비창업자, 소외계층 등에 실시하도록 하며, 초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창업자 및 소외계층 등에 대한 국가의 경제교육 노력의무 (안 제4조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국가의 임무 -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 기회의 충분한 제공 -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향상에 적합한 경제교육 내용 마련 -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인력의 체계적 양성 - <신 설>	○ 국가의 임무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창업자, 예비창업자, 경력단절자, 재취업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u>

현행법은 경제교육을 위한 국가의 임무로서 ①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②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향상에 적합한 경제교육 내용을 마련하며, ③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인력의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④ 창업자, 예비창업자,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자, 재취업자 및 소외계층 등에 대한 경제교육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재 정부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여 창업자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¹⁾. 또한 경력단절자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도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22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²⁾ 결과에 따르면 60~70대 노령층,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고졸미만의 저학력층의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연소득 7천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의 금융이해력이 68.7점으로 나타난 데 반해 연 3천만원 미만 저소득 계층의 금융이해력은 63.2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연령별로는 70대의 금융이해력이 61.1점으로, 학력별로는 고졸 미만이 59.3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
- 1) 예를 들어 한국창업진흥원은 ‘창업에듀’, ‘혁신창업스쿨’, ‘청소년비즈쿨’ 등 창업교육을 필요로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교육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사업계획 수립지원 등 창업을 위한 기본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2) 동 조사는 OECD 산하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글로벌 협력기구인 INFE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성인(만18세~79세)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수준을 측정하여 경제·금융 교육 방향 수립 및 OECD 국가간 비교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됨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 경제·금융교육 관련 국가간 정보 교환 및 국제표준(모범사례)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08년 5월 설립)

응답자 특성별 금융이해력

	연령별						소득계층 ¹⁾			학력		
	20대 ²⁾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고졸 미만	고졸	대졸 ³⁾ 이상
금융이해력	65.8	69.0	68.9	67.0	64.4	61.1	63.2	68.0	68.7	59.3	65.4	68.7
금융지식	74.9	78.2	79.3	77.2	72.8	65.5	70.2	77.5	81.0	63.8	74.9	78.2
금융행위	66.2	70.0	67.9	65.6	62.5	59.2	62.5	67.5	68.4	57.0	63.9	68.8
금융태도	48.9	50.9	53.0	52.6	53.8	57.6	52.5	52.6	47.8	56.8	52.3	51.6

주 : 1) 연소득 7천만원 이상 고소득층, 3천만원~7천만원 중소득층, 3천만원 미만 저소득층으로 구분

2) 만 18~29세

3) 전문대학 포함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3.30.)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창업자, 경력단절자, 재취업자, 소외계층 등에 대한 경제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정안과 같이 국가의 임무에 이들에 대한 경제교육 노력의무를 포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의 임무) ① ~ ③ (생략)	제4조(국가의 임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국가는 창업자, 예비창업자,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자, 재취업자, 소외계층 등에 대한 경제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에서의 경제교과 교육 포함(안 제5조제2항 후단 신설)

현 행	개 정 안
○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활성화 -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	○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활성화 - (후단 신설) 이 경우 학교의 교과에 경제교과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선언적인 규정으로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경제교육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례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는 사회탐구영역 선택과목 9과목 중 경제를 선택한 학생은 전체의 2.47%에 불과³⁾하여 9개 과목 중 가장 적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에 ‘경제 교과’가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3)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최대 2과목 선택 가능) 지원자 현황>

구분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계
인원(명)	155,710	35,755	53,830	41,301	29,331	23,055	6,480	28,811	148,410	522,683
비율(%)	59.46	13.65	20.55	15.77	11.20	8.80	2.47	11.00	56.67	199.58

자료 : 교육부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4항에서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동 개정안에서는 ‘교과’에 ‘경제 교과’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법률체계 상 모호한 문제가 있음.

구체적으로, 현행법 제5조제2항 본문에서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이 경우 교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교과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후단을 신설하고 있음. 이를 문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동 개정예에 따라 학교의 교과과정에 경제교과가 바로 포함되는 것은 아님. 그렇다면 이때 국가에게 교과과정에 경제교과가 포함되도록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교과가 포함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법률에서 부여한 의무를 다한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음.

특히,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4)에서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과 ‘교과’를 정하는 권한이 각각 국가교육위원회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와 대통령령이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과 교과를 정할 때 동 개정안의 내용에 구속받는지, 받는다면 어느 범위까지 받는지도 불명확함.

4)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도 이러한 이유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특히 교육부는 현재 ‘경제’ 과목에 대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학문분야인 ‘사회’ 교과에 편제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경제’ 교과를 신설할 경우 다수의 세부 과목이 교과과정으로 편제되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의 발달 단계상 ‘경제’ 교과 편입은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임.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법률에서 특정 교육과정을 규정하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는 현행 기조와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함.

한편,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특정 분야의 교육을 지원하는 법률 중 학교의 교과과정에 특정 교과를 포함하도록 명시한 입법례는 찾기 어려움⁵⁾. 다만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제2항⁶⁾에서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가 있으며, 예외적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제1항⁷⁾에서 학

5) 대부분 학교에서의 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예) 「법교육지원법」 제7조(학교 법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 법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학교 법교육 활동 및 자치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6)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7)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교로 하여금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에 포함될 사항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심사 시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생략)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 ----- 이 경우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 교과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경제교육 핵심개념에 기업가정신 포함(안 제6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 경제교육 핵심개념 예시 - 시장원리, 합리적 선택, 노동, 금융, 경제시민의식 등	○ 경제교육 핵심개념 예시 - 시장원리, 합리적 선택, 노동, 금융, 경제시민의식, <u>기업가정신</u> 등

현행법은 경제교육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개념의 예시로 ‘시장원리, 합리적 선택, 노동, 금융, 경제시민의식 등’을 들고 있음. 개정안은 여기에 더하여 ‘기업가정신’을 경제교육 핵심개념의 예시로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6조제3항의 경제교육 핵심개념 예시 부분은 2009년 제정 당시에는 없었으나, 2016년 개정 시 추가된 부분으로,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 관련 법률과 경제시민의식 등에 관한 내용’이 경제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당시의 개정안⁸⁾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제교육 핵심개념의 예시에 포함시켜 제시하는 것으로 조정된 것임.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이 활발하게 발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8) (의안번호 1914654, 김현미의원 대표발의)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문 중 발췌: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교육과정 등에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 관련 법률과 경제시민의식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 제2조제4호에서는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경제개념”이라고 정의하면서, 제6조제1항에서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음.

현재 이에 따라 ‘경제교육 핵심개념’이 아직 정립되지는 않았으나, 동법 제정 전인 2008년 경제교육협의회에서 연구한 자료에서 경제교육과정의 경제 영역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을 종합하고 경제교육전문가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급별로 10개의 ‘핵심개념’을 제시한 바 있음.

[2008년 경제교육협의회 제시 학급별 경제교육핵심개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희소성과 선택	희소성과 선택	희소성과 선택
교환과 특화	교환과 특화	교환과 특화
시장과 가격	시장과 가격	시장과 가격
기업과 생산	기업과 생산	기업과 생산
소비와 신용	소비와 신용	소비와 신용
금융과 자산관리	금융과 자산관리	금융과 자산관리
세금과 정부지출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실업과 인플레이션	실업과 인플레이션
무역	국제거래	국제거래

둘째, 현행법 제6조제2항에서는 “경제교육 핵심개념은 경제교육단체와 관련 학계의 전문가 및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원리, 경제교육 방법론, 실생활 활용도 및 교육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개정안이 경제교육 핵심개념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기업가정신’이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①·② (생략)	제6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교육과정 등에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시장원리, 합리적 선택, 노동, 금융, <u>경제시민의식</u> 등 경제교육 핵심개념과 실생활 적용사례들을 반영하여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 ----- <u>경제시민의식, 기업가정신</u> 등-----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48